제2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12.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2월 21일 15:00 ~ 16:06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원장

(의결 제357~389호, 보고 제59~65호)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이　승　헌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2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2년도 제2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56호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IBK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57호『**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7호 안건과 관련하여, 메리츠증권㈜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회사 자체감사를 통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임직원의 경우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6조 개정('20.5.13.)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를 감경하고, 임직원 중 2명의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혐의입증 부분을 보완하여 차후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 26인의 과태료를 각각 20% 감경 적용하여 수정의결 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8호『**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디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 등록 신청에 대해 변경인가 및 추가등록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9호『**㈜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60호『**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61호『**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62호『**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63호『**교보생명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64호『**교보생명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65호『**㈜쿠프파이맵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66호『**㈜그레이드헬스체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67호『**DB손해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68호『**㈜아이콘루프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제369호『**㈜코인플러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0호『**토스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1호『**㈜카카오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372호『**토스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373호『**㈜신한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4호『**㈜신한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5호『**㈜우리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6호『㈜**삼성카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7호『㈜**현대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378호『㈜**신한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9호『㈜**삼성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도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율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수용을 해놓고 영업이 잘 안 되도록 부가요건을 너무 많이 걸거나 아니면 제도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에 특정한 지침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독려하셔서 빨리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음.

○ (위원) ㈜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주요부가조건 부과와 관련된 것인데 아마 이것이 종전과 유사한 조각투자에서는 대상 물건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니까 비우량 자산이 포함되지 않도

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것 같음.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채권적 권리인데 종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유 형태의 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심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문제가 생겨도 물권적 권리로 대항이 가능한데, 이번은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관리책임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음. 또 하나는 예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했던 것과 동일한 발행과 유통을 결합한 형태에 대한 것임.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아마 부가조건, 구체적으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림. 세 번째는 향후 2년 이후 심사할 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림.

○ (보고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본시장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음. 일단 대출채권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형 SOC 라든지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형실물자산 담보부채권이 기초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함. 그리고 관리과정에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부가조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요약본에서는 다 다루지 않았지만 안건을 보시면 신탁 수익증권 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에이판다파트너스가 신탁 수익증권의 3%를 계약종료 시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에이판다파트너스가 신탁 대상 대출채권 물색 및 검증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딜소싱 관련 전문인

력도 3인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음.

○ (보고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통플랫폼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신탁구조를 사용하여 혁신금융사업자와 도산절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임. 두 번째로 채권적 권리의 관리책임은 기초자산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LTV 70%를 대출취급 시와 신탁 설정 시에 두 번 체크하도록 준비를 했음. 그래서 70%의 LTV가 적용이 됨.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신용위험분담조치라고 해서 원자산 보유자와 ㈜에이판다파트너스 모두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3%씩을 각각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음. 그래서 이 신탁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원자산보유자와 혁신금융사업자 모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신용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조치를 핵심적으로 마련했음. 그다음에 유통체계 관련되어서는 지난 한우나 미술품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 안내하고 있고,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가조건에 반영해서 다시 안내를 했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보고 드리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의 위험에 대한 안내나 설명 같은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투자자나 소비자한테

설명이라든가 안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 (보고자) 투자자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을 했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동산이나 다른 저작권에 비해서 대형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단일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의 흐름이라든지 수익성은 오히려 부동산 조각투자 등에 비해서 더 명확하게 고정된 흐름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오히려 단일 대출채권 유동화해서 조각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본인의 수익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실무담당과에서 여러 가지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물어본 것인데 다 잘 준비를 해서 검토해 주신 것으로 이해됐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다 점검이 됐을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본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아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임.

○ (위원) 초기부터 관리 감독측면에서 진행상황을 엄밀히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0호『**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1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화예대율 산정시 정책자금대출 12종을 제외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이 건 관련하여 안건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예대율 관리가 역사적 소명이 있고 중요한 관리수단이었으나 너무 직접적이고 원시적 형태의 관리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를 했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임.

○ (위원) 예대율 관리제도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람.

○ (위원)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고 시장성 차입을 억제했던 효

과도 있음. 근본적으로는 예대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측면이 있는데, 순기능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해보고 시장불안이 걷히고 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시간을 갖고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보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2호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구은행에 대하여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3호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3년 1분기 중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4호 **『리딩에이스캐피탈㈜의 ㈜리딩플러스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리딩에이스캐피탈㈜의 ㈜리딩플러스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P2P업을 금융보험업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5호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5개 지역농·축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5개 지역농·축협의 금융투자업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6호『㈜**트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트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직원 5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7호『**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업무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22년도 업무계획 중 유동화증권 발행액 목표를 부동산시장 둔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8호『**퍼시픽 라이프 리 인터내셔널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안 등**』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퍼시픽라이프리 그룹의 조직개편에 따라 퍼시픽라이프리 영국 법인의 한국지점을 퍼시픽라이프리 인터내셔널의 한국지점

으로 변경하기 위한 보험업 허가 및 보험계약이전, 영업 양수·양도를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9호**『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감독규정과 지배구조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59호『○○○○○ ○ ○○○○ ○○○○ ○○○○ **결과 및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 ○○○○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60호『**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한시적 유연화 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간 10%p 확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61호『**2022년 3/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현황 보고**』, 제62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 제63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 제64호『**2022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보고**』, 제65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2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06분 폐회)